

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867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07. 11. .

발 의 자 : 윤창근 의원 등 인

□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(2007. 5. 11공포)됨에 따라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개정 하고
-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(2007. 11. 6공포)에 의거 시 기구가 개편되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상임위원회의 소관 범위를 개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,
- 제7조의2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방법도 일부 개정하여 선임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5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62조”로
“성남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위원회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
및 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“성남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
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로 개정
- 제3조제2항제2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“비전추진단”을 신설하고,
“성남시중앙문화정보센터”를 “성남시정보문화센터”로 개정
- 제4조제1항 중 “의원은 하나의 위원(이하 “상임위원”이라 한다)이 된다”를

“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(이하 “상임위원” 이라 한다)이 된다” 로 개정

- 제5조제4항을 삭제
- 제7조2제2항 중 “교섭단체대표 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행한다”를 “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”로 개정
- 제7조2제4항 중 “제6조제2항”을 “제6조제1항”으로 개정

☐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
-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조

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5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62조”로 “성남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위원회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성남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“비전추진단”을 신설하고, “성남시 중앙문화정보센터”를 “성남시정보문화센터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의원은 하나의 위원(이하 “상임위원”이라 한다)이 된다”를 “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(이하 “상임위원”이라 한다)이 된다”로 한다.

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제7조2제2항 중 “교섭단체대표 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행한다”를 “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”로 한다.

제7조2제4항 중 “제6조제2항”을 “제6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법 제54조의</u> 규정에 의하여 <u>성남시의회(이하 “의회” 라 한다)</u> <u>위원회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</u> 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----- 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(생략) ②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. 1. (생략) 2. 자치행정위원회 공보담당관실, 감사담당관실, <u>(신설)</u>, 행정기획국, <u>사업소 중 성남시중앙문화정보센터,</u>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----- 제4조(상임위원회 위원) ①의원은 하나의 위원 (이하 “상임위원” 이라 한다)이 된다. ---- 제5조(상임위원회 임기) ①~③(생략) ④<u>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 임기는 기존 상임</u> <u>위원회의 상임위원 임기와 같다.</u> 제7조의2(예산결산특별위원회) ①(생략) ② ----- <u>각 교섭단체대표 의원의 요청으로</u> <u>의장이 행한다.</u> ③(생략) ④ --- 제6조제2항 -----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지방자치법</u>」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<u>성남시의회(이하 “의회” 라 한다)</u> <u>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</u> 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----- 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(현행과 같음) ②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자치행정위원회 공보담당관실, 감사담당관실, <u>비전추진단,</u> 행정기획국, <u>사업소 중 성남시정보문화센터,</u>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----- 제4조(상임위원회 위원) ①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(이하 “상임위원” 이라 한다)이 된다. ----- 제5조(상임위원회 임기) ①~③(현행과 같음) (삭제) 제7조의2(예산결산특별위원회) ①(현행과 같음) ②----- <u>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</u> <u>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</u> ③(현행과 같음) ④ --- 제6조제1항 -----